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1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일

제출자 : 강 서 구 청 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사회적 기업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 정비 및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회적 기업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제3호)

나. 위원의 자격 요건 정비(안 제11조제3항)

다.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 마련(안 제11조제4항)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10. 2.~10. 22.) 결과: 의견 없음
-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6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서구가 정한 소정의”를 “구가 정한”으로, “강서구와”를 “구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기업·학계”를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제4항 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u>서울형사회적기업</u>,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p> <p>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공유사업의 지원) ① (생 략)</p> <p>②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u>대하여</u>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u>예비사회적기업</u>----- ----- ----- ----- ----- -----.</p> <p>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 ----- ----- <u>조례</u>로 -----.</p> <p>제7조(공유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대해서</u>----- ----- -----.</p>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강서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강서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구분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 2명

2.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업 · 학계 등

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

이 있는 사람

<신설>

<신설>

③ ----- 구

가 정한 -----

- 구와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

-----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

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전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해당 안전이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듣거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과장 이덕수

(담당: 행정7급 박정배 / ☎ 2600-6920)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 정비 및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 마련

##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관련 인용 조례명 및 용어 변경
- 위원의 자격 요건 정비
-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 마련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관련 인용 조례명 및 일부 용어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 및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38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기획예산과	통보(조치)일		2019. 10. 1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47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박정배	전화번호	02-2600-6920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10월 0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10월 15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